



## 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①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 1. 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제도란?1)

- 유엔특별보고관 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특별절차의 일환임. 유엔특별절차 제도(The system of Special Procedure)는 유엔인권의 주요 구성 조직이며, 거의 모든 인권문제를 다룸. 특별절차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또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가로 불리는 개별 전문가와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이루어져 있음. 개별전문가는 1인으로 활동하고, 실무그룹은 5개 유엔의 지역그룹(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케리비안, 동유럽, 서유럽)에서 각 1명씩 임명되어 5명이 한 그룹으로 활동. 특정 국가 또는 주제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한 인권모니터 활동을 함.
- 유엔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의해 임명되며,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동함. 특별보고관은 **공정성(impartiality)**과 **성실성(probity)**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성(independence)**, **효율성(efficiency)**, **업무능력(competence)**, **진실성(integrity)**을 추구하며 업무를 수행함. 특별보고관은 유엔의 직원은 아니며, 따라서 무보수임. 임무 수임자의 독립성은 임무수행에 공정성을 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임무수임자-국가별 특별절차(country mandate)이든 주제별 특별절차(thematic mandate)든-의 임기는 최대 6년임.
- 예를 들어,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보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에 관한 주제별 특별절차며,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국별 특별절차임. 2016년 9월 30일 현재, 43개 주제별 특별절차와 14개 국별 특별절차가 있음(총 57개의 특별절차).
- 14개 국가별특별절차 현황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북한, 에리트레아, 하이티, 이란, 말리, 미얀마,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임

1)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Welcomepage.aspx>) 특별절차 제도 인용, 검색일: 2016. 10. 9

- 43개 주제별 특별절차는 아프리카 인종 (차별), 알비니즘, 자의적 구금, 초국적기업과 인권, 문화적 권리, 장애인, 비자발적 실종, 교육, 자의적 처형, 식량권, 외채,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유해물질, 건강, 주거, 인권활동가, 사법독립, 원주민, 국내 실종자,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 증진, 국제연대, 용병, 이주노동자, 소수민, 노인, 빈곤, 사생활, 인종주의, 종교, 어린이 인신매매, 성적 지향, 노예, 테러리즘, 고문, 인신매매, 진실과 정의 재발방지, 일방적 강제조치, 여성폭력, 물위생, 여성권리 등이 있음
- 유엔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 주요 활동 내용은 총회에 보고됨. 특별보고관의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 등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